

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8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5년 12월 17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부정확하게 사용된 문구를 수정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“수급권자에 대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” 을 “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” 로 하고, “제출하여야 한다” 를 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” 로 함 (안 제5조)
- “반환을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” 를 “반환을 명하거나” 로 함 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개정안 제5조제1항 중 “수급권자에 대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” 을 “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” 로 하고, “제출하여야 한다” 를 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” 로 한다.
- 개정안 제6조 중 “반환을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” 를 “반환을 명하거나” 로 한다.

수정안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교부금의 신청) ①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<u>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이 필요한 때에는</u>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<u>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5조(교부금의 신청) ①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<u>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</u>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<u>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5조(교부금의 신청) ①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<u>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</u>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<u>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6조(교부금의 반환) 시 장은 다음 <u>각호의 1에</u>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 장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<u>반환</u> <u>을 명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6조(교부금의 반환) 시 장은 다음 <u>각 호의 어느</u> <u>하나에</u>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구청장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의 <u>반환을 반환할 것을</u> <u>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</u> <u>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6조(교부금의 반환) 시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구청장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의 <u>반환을 명하거나 필</u> <u>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</u> <u>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의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의료급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”를 “「의료급여법」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세입)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고보조금
2.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「의료급여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
4.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
5.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
6. 결산상 잉여금(자치구분 포함) 및 그 밖의 수입금

제3조 각 호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라”로, 4호중 “동법”을 “같은 법”으로 하며, 제4조 중 “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에 따라”로 하고, 제5조제2항 중 “당해 구”를 “해당 자치구”로 하며, 제5조제1항과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교부금의 신청) ①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**의료급여사업**을 실시하기 위하여 **기금의 교부신청**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**신청서를 제출**하여야 한다.

제6조(교부금의 반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**반환을 명하**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
2.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3. 기금의 운영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7조제4호중 “대불금”을 “대지급금”으로 하며,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“대불”을 “대지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<u>조례</u>	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<u>설치 및 운영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의료급여 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 고,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의료급여 법</u> 」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 시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<u>특별회계</u> ----- ----- ----- ---
제2조(세입) <u>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 1. <u>국고보조금</u> 2. <u>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u> 〈신설〉 〈신설〉 3. <u>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</u> 4. <u>결산상 잉여금(자치구분 포함) 및 기타 수입금</u>	제2조(세입) <u>의료급여기금특별회 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 1. <u>국고보조금</u> 2. <u>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u> 3. 「 <u>의료급여법</u> 」 (이하 "법"이 라 한다) 제21조에 따라 상환 <u>받은 대지급금</u> 4. <u>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 당이득금</u> 5. <u>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 징금</u> 6. <u>결산상 잉여금(자치구분 포함) 및 그 밖의 수입금</u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3조의 <u>규정에 의한</u> 의료급여수급권자(이하 "수급권자"라 한다)에 대한 급여비용 2. 법 제20조의 <u>규정에 의한</u> 급여비용의 <u>대불</u>에 소요되는 비용 3. 법 제33조제2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4. <u>동법</u>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 의료급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	<p>제3조(세출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_____에 따라_____ 2. _____에 따라_____대지 <u>급금</u>(代支給金)에_____ 3. _____에 따라_____ 4. <u>같은 법</u> _____ 에 따라 _____
<p>제4조(급여비용의 예탁) 시장은 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<u>규정에 의하여</u> 제3조제1호의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다.</p>	<p>제4조(급여비용의 예탁)_____</p> <p>_____에 따라_____</p>
<p>제5조(교부금의 신청) ① <u>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을 <u>당해 구의</u>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교부금의 신청) ① <u>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_____</p> <p>_____해당 자치구_____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교부금의 반환) <u>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교부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</u> 2. <u>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</u> 3. <u>회계운용상 구간에 교부금액의 증감 조정이 필요한 때</u> 	<p>제6조(교부금의 반환) <u>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교부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</u> 2. <u>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</u> 3. <u>기금의 운영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u>
<p>제7조(예산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~3.(생략) 4. <u>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</u></p>	<p>제7조(예산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~3. (현행과 같음) 4. <u>대지급금</u>-----</p>

현 행

(별지 제1호서식)

기 관 명				
우	주소	(전화())	(전송())	
	과	과장	사무관	담당자

문서번호 :
 시행일자 :
 수 신 : 서울특별시청 발신 : 구청장
 제 목 : 의료급여기금교부신청
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

사 업 명				
사 업 기 간				
사 업 개 요				
신 청 금 액	지원내역	보조금 (본인부담금환급금, 대물금 등)	기타행정경비	
산 출 기 초				

(별지 제2호서식)

기 관 명				
우	주소	(전화())	(전송())	
	과	과장	사무관	담당자

문서번호 :
 시행일자 :
 수 신 : 서울특별시청 발신 : 구청장
 제 목 :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용현황(분기)

1. 예산조성현황 (단위 : 천원)

구분	합계	시교부금	대물상환액	부당이득금	기타수입금
당분기					
누 계					

2. 예산운용실적(지출현황) (단위 : 천원)

구분	합계	대물금	본인부담금 환급금	행정경비	기 타
당분기					
누 계					

3. 대물금 운용현황 (단위 : 천원)

구분	대물금	타 시·군 구전입금	타 시·군 구전출금	대물상환금	결손처분	미상환금
당분기						
누 계						

개 정 안

(별지 제1호서식)

기 관 명				
우	주소	(전화())	(전송())	
	과	과장	사무관	담당자

문서번호 :
 시행일자 :
 수 신 : 서울특별시청 발신 : 구청장
 제 목 : 의료급여기금교부신청
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

사 업 명				
사 업 기 간				
사 업 개 요				
신 청 금 액	지원내역	보조금 (본인부담금환급금, 대지급금 등)	기타행정경비	
산 출 기 초				

(별지 제2호서식)

기 관 명				
우	주소	(전화())	(전송())	
	과	과장	사무관	담당자

문서번호 :
 시행일자 :
 수 신 : 서울특별시청 발신 : 구청장
 제 목 :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용현황(분기)

1. 예산조성현황 (단위 : 천원)

구분	합계	시교부금	대지급상환액	부당이득금	기타수입금
당분기					
누 계					

2. 예산운용실적(지출현황) (단위 : 천원)

구분	합계	대지급금	본인부담금 환급금	행정경비	기 타
당분기					
누 계					

3. 대지급금 운용현황 (단위 : 천원)

구분	대지급금	타 시·군 구전입금	타 시·군 구전출금	대지급상환금	결손처분	미상환금
당분기						
누 계						